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20일

명동장인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전 *순	전 *순 1964-12-02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(남산동2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6-10